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방안



沈 永 燮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머리말

지난 7월 5일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하여 선포하였다. 기업계, 사업자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13인의 민간대표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금년 3월에 발족하여 그동안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의 제정을 주도하면서 준비해 왔다. 또한 '규범(안)'의 확정과정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도 하였다.

이제껏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라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런 가운데 이처럼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나선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는 누가 무어라 해도 기업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주인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기업대로 상응한 대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폄훼되길 일수였고,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의 협조없이 강제적인 법 집행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 目 次 ■

1. 머리말
2. 경쟁환경의 변화와 정책수단의 선택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4. 기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5.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제도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의 규모는 지난 1992년의 34억 원에서 2000년에는 2,700억 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지만, 시장질서가 잡히기는 커녕 그 반대였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이 오히려 1993년의 783건에서 2000년에는 1,587건으로 늘어나고 만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기업대로 과징금이다 소송비용이다 하여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마련이고, 기업 이미지의 실추 등 유·무형의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시장질서의 문란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정부와 기업계는 마침내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 집행보다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교훈을 터득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의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의 확립은 정부의 행정자원의 낭비와 기업의 순응비용 부담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다. 경제적인 손실과 기업이미지의 손상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도 또한 이 시점에서 기업 스스로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에 나서도록 한 배경이다. 자율과 신뢰에 바탕을 둔 기업경영과 행동으로 대변되는 기업윤리는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윤리의식이 결여된 기업은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키는 것 역시 기업윤리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장경쟁의 룰을 어기고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기업은 시장에서 외면당하기 마련이다. 경쟁당국이나 경쟁기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투자자나 소비자, 고객, 거래상대자,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세계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공정경쟁을 위한 경쟁법¹⁾의 자율준수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에 발맞추어 스스로 경쟁질서를 지키는 풍토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최근 5년 사이에 미국 및 EU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하여 거의 1,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매년 외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국내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자국 내의 시장경쟁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국제카르텔 등 경쟁법을 적용하는 추세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가격담합이나 우월적 지위남용 등과 같은 경쟁법을 어겨 부과된 것이다. 이제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경쟁법을 준수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가 되어가고 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도 경쟁법의 자율준수는 기업경영의 필수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공정거래질서의 자발적인 준수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 기업과 국내 일부 기업에서 시도되고 있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

1) '경쟁법'은 기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운영되는 법규들을 포괄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물론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들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여 적절한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경쟁환경의 변화와 정책수단의 선택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경쟁당국은 복잡다기해지는 경쟁환경 하에서 경쟁정책을 운용할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간 경쟁으로 인해 기업들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쟁당국의 예산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정보화·세계

화의 진전에 따라 경쟁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 위반행위가 대두되고 시장의 변화속도와 법 집행기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경쟁정책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법 집행방식에 의한 경쟁질서 확보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경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운용방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 경쟁당국이 주창하고 있는 Conformity Continuum 방식에 의한 정책집행 프로그램이다. 이 방식은 경쟁법 집행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통합·운용함

<표1> 캐나다의 Conformity Continuum

대분류	소분류	세부 집행수단	적용범위
교육을 통한 법준수 확보 수단	간행물	안내 팸플렛, 법집행 가이드라인, 연례보고서, 언론보도, 토론자료 등	일반적용
	홍보	연설, 세미나, 시사회, 홈페이지, 언론접촉, 홍보비디오 등	
	경쟁주창	산업정책적 규제에 대한 개입, 다른 정부부처·외국경쟁당국·국제기구와 협력 등	
법준수를 촉진하는 수단	모니터링	피해·불만사항 접수, 상담,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화, 특정사안 점검, 재계와의 정례적 접촉 등	특별적용
	자발적 준수	기업내부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업계의 자발적 준수 강령, 법위반 우려사안에 대한 사전심사·사전 권고	
	설득	특정행위의 법위반 가능성을 설명, 경고장 발송, 협의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대처 수단	동의	동의명령, 위반행위 중지약속, 시정통고, 자발적인 제품환수	특별적용
	강제	검찰고발, 법원에 제소, 제품압수, 금지명령, 중지명령	

으로써 자율과 강제 조화를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쟁당국은 특정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수단을 선택 또는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어 경쟁법 준수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캐나다의 정책프로그램은 경쟁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용하는 정책수단의 집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책수단은 크게 (i) 간행물, 홍보, 경쟁주창 등 교육을 통한 준수 유도, (ii) 모니터링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한 법 준수의 촉진, (iii) 설득, 동의, 강제 등의 수단을 동원한 법 위반에 대한 대응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각 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프로그램에 포함된 정책수단은 적용범위에 따라 일반적용과 특별적용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용은 일반대중이나 시장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모니터링의 형태를 띤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특별적용은 개별기업의 법 준수여부에 대한 대응수단이나 특정한 법 위반에 대한 해결수단을 의미한다.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법 집행의 자발적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기업에 적용되는 정책수단으로 분류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제시해 준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자율행동규범(Code of Conduct)과 구별되어야 한다. 자율행동규범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기업계 전반에 걸쳐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의

미한다. 따라서 자율행동규범은 기업 단위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표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실행단계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경쟁법의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직원들로부터 무의식중에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경쟁법 위반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크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경쟁법 위반의 위험을 감소시켜 법적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기업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기업의 임직원들은 경쟁법이나 경쟁정책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이해를 높여 법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 기업의 관리자들은 종업원들이 경쟁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게 된다.
- 기업의 임직원들은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법 위반행위의 조사나 기소에 따른 법률 자문이나 소송, 벌금,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 정상적인 업무의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이 감소된다.
- 기업의 임직원들은 경쟁자, 공급자 또는 소비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감지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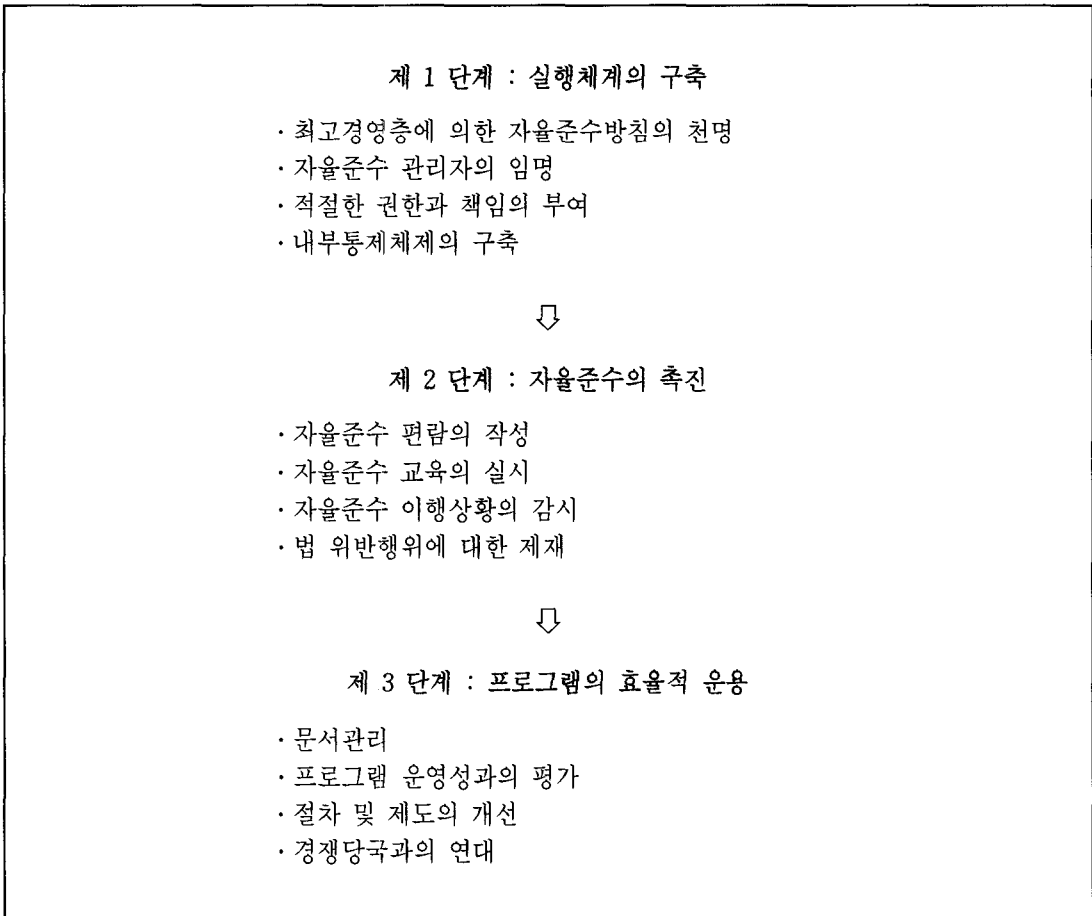
· 기업은 경쟁당국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상의 참작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실행체계의 구축, 자율준수의 촉진, 운용성과의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등 3단계로 나누어 실행된다.<그림1> 제1단계인 실행체계의 구축 단계에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자율준수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행동강령이나 행동준칙을 마련한 다음, 자율준수를 관리할 임원을 임명하고 조직을 구축하여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가

장 중요한 요소는 최고경영자로부터 일반직원에게 이르기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표명되어 인식의 전환과 동기의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조직의 구성이 완료되면 제2단계인 자율준수의 촉진단계에서는 자율준수의 관리를 담당할 부서가 중심이 되어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실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자율준수가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를 감시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그림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행 단계



제재조치가 이루어진다. 자율준수의 이행상황이나 감시결과를 보고를 통해 최고경영자에게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율준수정책이나 운영제도에 관한 개선을 시도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발전을 모색하기도 한다.

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전술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행단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는 ①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의 표명, ②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등 자율준수 관리조직의 구축, ③자율준수편람의 제작, ④자율준수교육의 실시, ⑤자율준수의 감시 등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⑥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그리고 ⑦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등이다.

①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Commitment)

기업 내에서 경쟁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방침의 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를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자율준수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는 자율준수 행동강령이나 자율준수정책과 같은 형태의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문서는 이사회회의 결의 등을 통해 채택되고, 기업 내부의 종업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대중에게 공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자율준수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기업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²⁾는 프로그램의 설계, 임직원에 대한 인식의 고취, 운영조직의 관리,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자율준수의 감시 등을 관장하는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아울러 부서간의 마찰을 조정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은 기업 내에 축적된 자율준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위원들간에 공유하고 관련 부서에 전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자율준수협의회는 또한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의 성격상 다른 부서의 임직원들과 빚게 될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자율준수를 위한 조직이 정비되면 기업은

2) 일반적으로 Compliance Officer가 하는 주 임무는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가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보고 및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일견 감사(Audit Inspection)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Compliance는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전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임직원들이 경쟁법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자율준수편람은 가장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 기업의 업무나 환경 및 경쟁법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편람이 정확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고 적절히 배포되고 있는가를 감독해야 할 것이다.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자율준수편람은 없으므로 개별 기업은 기업조직과 영업특성에 맞는 편람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크고 기능이 복잡하면 각 부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 및 위험도가 각기 다르므로 자율준수편람은 부서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에 관한 교육은 기업 내부에 자율준수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업은 모든 임직원들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인지능력 및 사후 식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준수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자율준수교육은 피교육자의 특성에 맞게 일반교육과 특별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 위반가능성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실시되는 일반교육은 주로 법 위반행위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집중적인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실제로 법 위반을 사전에 최대

한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법 위반행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하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기업 내부의 모니터링제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율준수 모니터링제도는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적절한 도구가 된다.

감독(supervision), 감사(audit) 및 보고(reporting)는 자율준수감시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세 가지 구성요소이다. 감독은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감사는 기업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반경쟁적인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고는 종업원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최고경영층에 전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⑥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 경쟁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법 위반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징계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필수불가결하다.

⑦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문서관리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율준수의 시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문서의 관리체제

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서관리는 또한 기업의 경쟁법 위반시 경쟁당국에 대한 근거 자료의 제출, 정상참작의 요청 등에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기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미국, EU, 일본,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등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이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의 경우 경쟁당국이 1998년에 표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120여 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권고한 결과, 현재 80여 개의 기업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중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민간 자율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호주의 경우 기업계, 컨설팅회사, 학계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율준수전문가협회(ACPA : Association of Compliance Professionals Australia)가 조직되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기업에 확산시키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가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은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대외신인도가 향상됨은 물론,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영자, 주주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한 기업경쟁력을 갖추는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단지 형식적으로만 채택되기보다는 조직 내부에서 흡수되어 일상적인 기업행동의 준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사항이지만, 일단 도입하게 되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한다면, 이는 경쟁법의 위반시 경쟁당국에 정상의 참작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게 된다.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i) 인식의 전환 및 실천의지, (ii) 체계적인 조직의 구축, (iii)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등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수반되므로 경영상의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업의 상위직에서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영혁신적인 노력에 의해 자율준수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최고경영자는 경쟁법의 자율준수가 단순히 법률전문가의 고용이나 편람의 작성 및 교육에 의한 경영상의 부가기능이 아니고, 구매, 판매, 생산, 재무, 회계, 기술개발 등 기업의 모든 기능과 밀접히 연결되어 항상 염두에 두고 체크해야 할 사항임을 모든 임직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에 자기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기업의 자율준수의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

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자율준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위와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 관리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을 기업 내부의 자율준수 풍토를 고양시키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경쟁법 이외에 다른 법규의 자율준수도 중요한 경영사안이므로 자율준수 관리자는 모든 법규에 관하여 정통한 전문가를 등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경쟁법의 자율준수 관리만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을 위하여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직원이 기존의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자율준수 관리자는 경쟁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소비자보호, 환경,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의 준법감시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준수 관리자가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경쟁법의 자율준수를 실효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율준수 관리자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법 준수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자율준수 관리자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최고경영자로부터 위임받음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준수 관리자는 그 직위나 기업 내에서의 서열과 상관없이 최고경영자나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와 권한을 가져야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기업 내부에 자율준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의 주안점은

임직원들이 담당 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경쟁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경쟁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자율준수방침, 프로그램의 취지 및 자율준수방법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집중적인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은 임직원들이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하는데, 기업조직과 영업특성에 알맞게 부서별로 다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의한 제재조치의 목적이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응정보다 중임원들에게 반경쟁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재조치가 이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징계 수준이 법 위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담합행위를 비롯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를 인사조치하여 해당 행위와 관련되는 업무에서 면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계의 대상에는 법 위반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권유하거나 인정한 행위도 포함되도록 권고되고 있다. 물론 징계와 관련된 정황이나 사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연관된 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 자율준수교육을 통해 징계와 관련된 사례를 모든 임직원에게 주지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5.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제도들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시장질서에 관한 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계기로 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끊임없는 시장경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실체이자, 시장참여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강제적인 법 집행의 주체로 등장했었고, 기업은 단지 피동적인 법 순응의 주체로만 행동해 왔다고 인식될 뿐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을 언제까지나 정부에만 맡겨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선포하고, 이의 실천을 기업계에 권고한 일은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기업이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시장경쟁을 피하지 말고 이를 당당하게 겪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제정을 계기로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기업이 지키려 하지 않는 공정거래법을 지킨다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도 사실 없지 않았다. 공정거래든 불공정한 행위든 간에 기업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관행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처럼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사정

이 다르다. 불공정한 행위를 통하여 얻어진 이익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불공정한 행위에 의존하여 단기성과를 올리는데 익숙해진 종업원은 결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해를 가져다주는 장본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시장에서 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을 때 기업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쟁법의 준수를 스스로 촉진하고 감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격려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야만 그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가 있다. 이는 다음 두 가지의 제도로써 가능한 일이다.

첫째는 기업의 자율준수 관리자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식적인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경쟁법 준수와 관련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인식과 이의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의사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기업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문턱이 존재했으며, 그로 인해 경쟁법의 준수를 둘러싸고 견해의 심각한 차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럴 경우에 일방통행식의 경쟁법 강요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경험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당국과 기업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긴요한 바, 그 한 방안으로 경쟁당국과 기업의 자율준수 관리자들이 정기적인 회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쟁법규와 경쟁실태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정보교환이 적극적으로 활용될수록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실효성있게 운용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되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고, 여타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용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를 이미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이를 실효성있게 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이 유효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는 경우 제재수준을 경감해 주도록 量刑 가이드라인 (Sentencing Guideline)을 설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1993년부터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면제해 주는 면책제도(Leniency Program)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의 제정·선포를 계기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준수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공정거래규범 준수노력을 극대화한

다는 것이 골자이다. 우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설계하고 운용하는 경우 과징금의 규모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의 정도를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모범적이라 함은 7가지의 핵심요소를 모두 갖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실효성있게 운용되고, 이의 운용상황이 증권거래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또는 공개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해당 기업의 근거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모범기업들이 본의 아니게 발생된 위반행위를 사전에 시정 조치하였을 경우에도 과징금의 경감, 검찰고발 면제, 시정명령 대신 경고 발동, 공표명령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이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기업들은 경쟁법 위반의 예방효과뿐 아니라, 본의 아닌 법 위반 시에도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범기업상'을 제정하겠다고 하니, 수상기업으로서는 기업윤리와 관련된 대외이미지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일이다.

Man, being reasonable, must get drunk ; The best of life is but intoxication.

인간은 이성적이기에 취해야만 된다. 인생의 최고는 만취밖에 없다.

- Lord Byron -